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32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	---

1. 공익사업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 증여세 비과세(안철수의원안) ..	2
---	---

I. 개요

1.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032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안철수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6. 11.
- (3) 회 부 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법」은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세제 특례를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국제기구가 현행법상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정부 출연금 외 공익법인의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공익 성격의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가 부과됨으로써 민간분야의 기여문화 및 국제기부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공익사업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 증여세 비과세(안철수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제4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국가유공자 유족이 받은 성금 및 물품 등 - <신 설>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공익사업 수행 국제기구 추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 (현행과 같음) -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

* 안철수의원안 2024. 6. 11. 제출(의안번호 329)

☐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가 받은 기금, 성금 등 증여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려는 것임.

☐ 현행법¹⁾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상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고, 종교, 교육, 사회복지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가 출연받은 기금, 성금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으로서, 국제기부 확산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에서는 국제기구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일반기부금²⁾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에는 유

-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유엔개발계획(UNDP) 등이 해당됨.

개정안은 이들 국제기구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국제기구가 증여세 부담 없이 기부자가 출연한 금액을 온전히 공익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공익법인등이 우리나라에서 종교, 교육, 사회복지 등 공익사업³⁾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한 것인데, 국제적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이러한 세제상 혜택을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임.

문 의 처

02)6788-5161

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9., 10. (생략)